

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6. 24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6. 25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99. 7. 5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홍건표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여성계 대표를 여성위원회에 폭넓게 참여, 확대 운영함으로써
- 여성위원회 활성화로 실효성 있는 시책 개발 및 새로운 정책대안 등을 제시, 보다 발전적인 여성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조례 개정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위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(안 제3조)
- 위원회의 정기회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증회(안 제7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위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	○ 여성정책을 보다 폭넓게 의논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.
○ 15인으로 부족한 이유는?	○ 금융계, 법조계, 예술계 분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하려는 것입니다.
○ 정기회를 3회 증회하여 연 4회를 개최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	○ 97년부터 여성행사가 많아 자주 만나 여성정책을 토의하고 또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강제조항으로 두려는 것입니다.
○ 정기회나 임시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이 지급됩니까?	○ 지급됩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수정안의 요지

○ 별첨 참조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165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7. 5

제 출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수정이유

- 여성정책을 폭넓게 논의하고 또 여론을 수렴, 여성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
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시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됨

주요골자

- 위원회의 정기회를 분기 1회로 소집하려는 개정안을 현행대로 연 1회 소집하는 것으로 수정함

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(회의)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